

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6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2010년 감사원의 ‘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’ 감사 지적 및 2012년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 지침에 따라 우수 지역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평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, 당연직 이사선임 등에 관한 규정 마련(안 제2조, 제3조 신설)
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조항 신설
 - 평창군수의 당연직 이사 선임 조항 신설
- 평창군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조항 마련(안 제4조 신설)
 - 장학금 지급, 우수재원 지원 등 구체적인 장학 시행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
-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(안 제6조, 제7조 신설)
 - 군의 출연금 지원근거 신설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
 - 평창장학회의 설립 및 임원에 대한 규정과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
 - 기금 조성과 함께 군 재정으로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
 - 출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,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이 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“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” 감사 지적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강화된 장학재단 출연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